



제418회국회(정기회)
제7차기획재정위원회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최은석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4784호)

2024. 11.

기 획 재 정 위 원 회

전문위원 이정은

목 차

I . 개요	1
II . 주요 내용별 검토	2
1. 가상자산 거래 부정행위인 경우 무신고가산세 상향 (최은석의원안)	2

I. 개요

1. 최은석의원 대표발의안(의안번호 제4784호)

가. 제안경위

(1) 제 안 자 : 최은석의원 등 16인

(2) 제 안 일 : 2024. 10. 18.

(3) 회 부 일 : 2024. 10. 21.

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과세정보의 획득과 적발이 어려워 탈세가능성이 높은 역외탈세 신고의무 미이행자에 대해 일반 신고불성실가산세율보다 높은 100분의 60을 적용하고 있음.

그러나, 과세자료수집이 사실상 불가능한 해외 가상자산 증여거래를 통한 부정한 부의 세습이 빈번히 이뤄지고 있지만, 그 처벌수위는 증여세액의 40%로 상대적으로 낮은 편임. 이에, 가상자산을 국내 가상자산사업자가 운영하는 거래소를 통해 증여받지 아니하고, 해외거래소 또는 개인간거래(P2P거래)를 이용하여 증여를 받는 경우, 역외탈세 신고 미행자와 동일하게 처벌수위를 높여 납세자의 성실신고를 유도하고자 함(안 제47조의2).

II. 주요 내용별 검토

1. 가상자산 거래 부정행위인 경우 무신고가산세 상향

(최은석의원안)

현 행	개 정 안
☐ 무신고가산세(제47조의2) ○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 무신고 시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다음 각 호의 비율을 곱한 금액 - 일반 무신고: 100분의 20 - 부정행위로 인한 무신고: 100분의 40(<u>역외거래인 경우 100분의 60</u>)	☐ 가상자산 거래 부정행위 경우 역외 거래 부정행위(60%)와 같이 가산세율 강화 - 부정행위로 인한 미신고: 100분의 40(<u>역외거래인 경우, 국내 가상자산 사업자 운영하는 거래소외를 통한 거래 부정행위인 경우 100분의 60</u>)

* 최은석의원안 2024. 10. 18. 발의(의안번호 4784)

☐ 개정안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라목의 가상자산거래 외의 거래에서 발생한 부정행위인 경우, 역외거래 부정행위로 인한 무신고와 같이 가산세율을 60%로 강화하려는 것임.

☐ ‘가산세’란 세법에 규정하는 의무의 성실한 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그 세법에 의하여 산출된 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액을 말하며, 세법에 규정된 각종 의무의 불이행에 대한 일종의 행정벌, 그 중에서도 행정상의 질서벌에 해당하지만 그 형식에 있어서는

국가의 재정권에 근거하여 일반 조세의 부과절차에 따라 조세의 형식으로 부과·징수되는 것을 말함.

현행법¹⁾에 따른 ‘무신고가산세’는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추가로 부과하는 세금을 말하는데, 일반적인 무신고가산세는 20%이고, 부정행위²⁾로 인한 무신고의 경우는 40%이며, 부정행위로 인한 경우로서 역외거래³⁾인 경우는 60%의 가산세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음.

한편, 가상자산은 경제적 가치를 지닌 것으로서 전자적으로 거래 또는 이전될 수 있는 전자적 증표를 말하며⁴⁾, 2022. 1. 1.부터 「상

1) 「국세기본법」

제47조의2(무신고가산세) 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예정신고 및 중간신고를 포함하며, 「교육세법」 제9조에 따른 신고 중 금융·보험업자가 아닌 자의 신고와 「농어촌특별세법」 및 「종합부동산세법」에 따른 신고는 제외한다)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신고로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법 및 세법에 따른 가산세와 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은 제외하며, 이하 “무신고납부세액”이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곱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1. 부정행위로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100분의 40(역외거래에서 발생한 부정행위인 경우에는 100분의 60)
2. 제1호 외의 경우: 100분의 20

2) 「조세범 처벌법」

제3조(조세 포탈 등) ⑥ 제1항에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써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를 말한다.

1.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거짓 기재
2. 거짓 증빙 또는 거짓 문서의 작성 및 수취
3. 장부와 기록의 파괴
4. 재산의 은닉, 소득·수익·행위·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5. 고의적으로 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비치하지 아니하는 행위 또는 계산서,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합계표,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조작
6.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의2제1호에 따른 전자적 기업자원 관리설비의 조작 또는 전자세금계산서의 조작
7. 그 밖에 위계(偽計)에 의한 행위 또는 부정한 행위

3)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국제거래(이하 “국제거래”라 한다) 및 거래 당사자 양쪽이 거주자(내국법인과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을 포함한다)인 거래로서 국외에 있는 자산의 매매·임대차,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과 관련된 거래

4)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3. “가상자산”이란 경제적 가치를 지닌 것으로서 전자적으로 거래 또는 이전될 수 있는 전자적 증표(그에 관한 일체의 권리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 가. 화폐·채화·용역 등으로 교환될 수 없는 전자적 증표 또는 그 증표에 관한 정보로서 발행인이 사용처와 그 용도를 제한한 것
- 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제7호에 따른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과세대상임.⁵⁾⁶⁾

□ 개정안은 가상자산을 국내 가상자산사업자가 운영하는 거래소를 통해 거래하지 아니하고, 해외거래소 또는 개인간거래(P2P거래)를 이용하여 부정행위를 한 경우에 대하여는 역외거래에서 발생한 부정행위와 같이 60%의 가산세를 부과하려는 것으로, 높은 가산세 부담의 위험성이 조세탈루의 기대이익을 낮춤으로써 납세자의 성실신고를 유도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합리적인 입법조치로 보임.

문 의 처

02)6788-5161

결과물

- 다.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14호에 따른 선불전자지급수단 및 같은 조 제15호에 따른 전자화폐
- 라.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전자등록주식등
- 마. 「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어음
- 바. 「상법」 제862조에 따른 전자선하증권
- 사. 거래의 형태와 특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5)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時價)에 따른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경우에 대해서는 각각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시가로 본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주권상장법인의 주식등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등(제63조제2항에 해당하는 주식등은 제외한다)의 경우: 제63조제1항제1호가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
2.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가상자산의 경우: 제65조제2항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

제65조(그 밖의 조건부 권리 등의 평가) ②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가상자산은 해당 자산의 거래규모 및 거래방식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다.

6) 다만, 가상자산 소득 과세는 2025년 시행예정인데, 시행유예 개정안 등이 발의되어 있음.